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김 선 협*

<차례> _____

- | | |
|---------------------------------|------------------------------|
| I. 서론 | IV.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문제점 및 입법적 보완 |
| II. 보험사기의 개관 | V. 결론 |
| III.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

주제어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이중규제, 예비음모의 처벌, 입원적정성 심사, 심사업무 비용 분담, 전담기구 상설화, 수사인력의 확충.

<국문초록> 현행 형법·특정경제가중처벌법률, 상법, 민법, 보험업법에도 보험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 명문화되어 있다. 위의 법률로는 고도로 지능화·조직화된 보험사기 대처에 한계가 있다 판단되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2016년 3월 29일에 제정되어, 동년 9월 30일에 시행되게 되었다. 보험사기행위의 조사·방지·처벌에 관한 사항이 규정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보험사기 대처에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관련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체계성을 갖출 필요가 생각한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사항을 검토하고자 한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입법기술적 차원의 측면으로 첫째, 보험관계 업무 종사자의 보험사기에 가담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보험관계 업무 종사자는 일반인보다 보험회사의 업무처리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의 보험상품 특성 및 지급심사절차의 허점을 이용하여 보험사기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보험관계 업무 종사자가 연루된 보험사기에 대하여 보험업법에 행정 제재만을 규정할 뿐만 아니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구체적인 처벌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그러나 보험관계 업무 종사자에 대한 현행 보험업법에서의 행정제재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추가적인 처벌규정의 도입은 이중규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둘째,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보험계약자 등을 보호할 필요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현행 보험업법에 따르면 기초서류인 약관을 위반하여 보험금 지급을 지체·거절하는 경우 연간 수입보험료 50%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96조 제1항). 게다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도 지급 지체·거절사유와 관련된 규정이 존재하고 있다. 이렇듯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 지체·거절과 관련하여 보

* 법학박사/한국교통대 교양학부 외래교수

- 논문접수일(2017.11.30), 심사개시일(2017.12.23), 게재확정일(2017.12.27)

협계약자 등을 좀 더 두텁게 보호하고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상 보험회사의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보험회사에 대한 이중규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름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셋째, 보험사기행위 정의의 구체적인 유형화 및 예비·음모의 처벌의 필요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상 보험사기죄의 정의를 협소하게 규정하고 있어 보험계약사기와 관련하여 법적 공백이 발생되고 있으므로, 향후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우리나라는 보험사기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해외의 법률을 모델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을 제정하였다. 이러한 법률의 모델인 독일 및 오스트리아에서는 보험사기죄의 예비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형사적 제재인 예비·음모 규정을 둠으로써, 보험사기의 사전모의 단계에서부터 보험사기 처벌에 대한 공백을 최소화하고 잠재적 보험사기범들에게 중대한 범죄라는 경각심을 높여 보험사기를 예방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넷째, 입원적정성 심사의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와 심사업무 비용 분담의 필요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수사기관의 입원적정성 심사의뢰의 규정을 두고 있으면서, 심사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담보하는 기준과 심사비용 분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법적 공백으로 인한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입원적정성 심사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고, 심사비용 분담과 관련하여 민간보험회사, 수사기관의 분담비율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보험사기방지 전담기구 상설화 및 수사인력의 확충의 필요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정부합동보험범죄대책반은 보험사기수사 종합컨트롤기관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4부에 설치되어 있다. 현재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는 경제범죄전담부서로 모든 경제범죄와 관련된 사건을 맡고 있어, 보험사기범죄 수사의 체계성 및 전문성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러한 정부합동보험범죄대책반은 임시적 기관이며, 법적근거도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고도로 지능화·조직화된 보험사기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대검찰청에 전문화·조직화된 보험사기 전담기구의 상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더불어 보험회사 특수조사팀에 조사권을 부여하는 방안보다는, 감경에 전문성 및 체계성을 갖춘 보험사기범죄 전담부서를 신설하여 수사인력을 확충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I. 서론

보험사기는 2010년부터 매년 증가하고 있다.¹⁾ 기존의 형법·특정경제가중처벌법률·상법·민법·보험업법으로는 보험사기 대처에 한계가 있다 하여 학계에서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필요성의 주장²⁾이 제기됨과 더불어 정치권에서는 관련 입법안

1) 2010년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3,467억원(적발인원 54,994명), 2017년 상반기 적발금액은 3,703억원이다.

2) 박세민, “보험사기에 대한 현행 대응방안 분석과 그 개선책에 대한 연구”, 저스티스 통권 제111호, 한국법학원, 2009, 173면; 노명선, “형법상 보험사기죄 신설의 필요성(下)”, 손해보험 통권 제546호,

이 수차례 발의되어 왔다.³⁾ 오랜 논의 끝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2016년 3월 29일 제정되어, 2016년 9월 30일에 시행되었다. 이러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조사방지처벌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과 국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제1조).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8조). 여기서 보험사기행위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말한다(동법 제2조). 게다가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에 있어서 지체·거절하는 경우 보험회사에 대한 제재 강화로 과태료 1천만원을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동법 제5조, 제15조). 그리고 보험사기 조사수사 관련 업무절차등에 대하여, 보험회사의 보험사기의심 행위를 보고하게 되어 있고(동법 제4조), 수사기관에 고발 등 조치(동법 제6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입원적정성 심사의뢰(동법 제7조) 등으로 조사수사 업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⁴⁾ 이러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보험사기 방지 대처에 있어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그러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보험사기에 대하여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개별적 사항을 종합적으로 담기에는 입법기술적 차원의 측면에서는 부족한 면이 없지 않다. 따라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나아가야 할 정책적 방향으로 몇 가지 문제점을 고찰하고자 한다. 이하에서는 보험사기의 일반론,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의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의 문제점 및 입법적 보완점을 검토하고자 한다.

손해보험협회, 2014, 24면; 이욱, “기망행위로 인한 과다보험금 수령과 사기죄의 성립 범위·대법원 2012.1.26. 선고 2009도6690판결”, 손해보험 통권 제527호, 손해보험협회, 2012, 47면; 황현영,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입법적 과제”, 이슈와 논점 제1092호, 국회입법조사처, 2015 4면.

3) 김선협, “특집논문·현대법의 새로운 과제: 보험사기죄 신설에 관한 고찰”, 홍익법학 제17권 제1호,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83-95면.

4) 김선협, “자율주행자동차 보험사기에 관한 고찰”, 보험법연구 제10권 제1호, 한국보험법학회, 2016, 252면.

II. 보험사기의 개관

1. 보험사기의 개념과 특징

보험사기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여기에 보험 관련 불법행위에 관하여 ‘보험범죄’라는 표현이 보험사기와 혼용되는 경우가 있다. 이에 대하여 보험사기와 보험범죄를 구별하지 않는 견해, 보험범죄를 보험사기를 포함하는 더 넓은 개념이라고 보는 견해, 보험범죄는 구체적인 범법행위로 나타난 결과만을 지칭하고 보험사기는 보험가입시의 악의성을 포함하는 더 넓은 개념이라고 보는 견해 등이 있다.⁵⁾ 보험사기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사기피해의 간접성과 광범위성을 가지고 있다. 보험사기는 외견상 보험회사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것으로 보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보험료 인상을 통해 보험계약자에게 피해가 전가된다. 따라서 보험사기의 피해는 많은 사람에게 적은 액수로 전가되기 때문에 인식하지 못하거나 크게 문제 삼지 않은 경향이 있다. 둘째, 사기의 복잡성과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 다른 범죄의 결과로서 보험사기를 이용하기도 하지만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해 살인, 방화와 같은 타 범죄를 저지르는 등 복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또한, 보험은 일상생활 주변의 거의 모든 위험을 담보하고 있어 보험사기의 수법이 매우 다양하다. 셋째, 공범에 의한 범죄성을 가지고 있다. 보험사기는 보험사고를 위장하거나 범인 자신을 범행혐의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해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 주범이 대부분 피보험자이기 때문에 범행에 능숙한 공범이 보험사고를 일으키고 경찰이나 보험회사가 눈치 채지 못하도록 보험금 청구 절차를 밟는 경우가 많다. 보험사기는 보험약관이나 계약내용 등이 복잡하고 다양하여 내부종사자의 묵인, 방조, 공모행위가 많아지고 있다. 넷째, 조직화·지능화되어 있다. 최근 보험사기는 폭력조직, 병·의원, 정비업체, 택시기사 등 다수인이 개입된 전문보험사기단이 출현하는 등 점차 조직화 되는 경향이 있다. 또한, 법규 위반차량을 대상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고의 사망사고(교통사고, 방화 등)를 발생시켜 보험금을 편취하는 등 지능화되는 경향이 있다.⁶⁾

5) 김선협, 위의 각주 4)의 논문, 249면.

6) 금융감독원 보험방지센터 홈페이지(<http://www.fss.or.kr/fss/kr/main.html>) (검색일 2017.2.10.)

2. 보험사기의 유형과 현황

보험사기를 경성사기와 연성사기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경성사기는 연성사기와 달리 계획적이고 의도적으로 사고를 발생시켜 부당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를 말한다.⁷⁾ 예컨대 가해자와 피해자가 공모하여 사고를 위장하거나, 의도적으로 사고를 유발하는 경우처럼 보험계약이 담보하는 사고를 고의로 야기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는 행위를 말한다.⁸⁾ 이에 비해 연성사기는 기회사기(opportunity fraud)라고 불리며 합법적으로 발생한 보험사고 기회를 이용하여 불법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뜻한다.⁹⁾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사실은 전혀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의사의 진료를 받거나, 입원치료가 필요치 않은 경심임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입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자료나 휴업손해 보상금 또는 치료비 명목의 보험금을 더 많이 받아내기 위해 피해를 과장하는 자동차보험 의료비 과다청구 행위가 바로 전형적인 연성사기에 해당한다.¹⁰⁾

2017년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전년 동기 대비 6.4% 증가한 3,703억원으로 역대 최고금액으로 집계되었다.¹¹⁾ 적발인원은 총 44,141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2% 증가하였고, 1인당 평균 사기금액은 840만원으로 고액화되는 추세이다.¹²⁾ 보험종목별로는 손해보험 중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¹³⁾, 자동차 보험사기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다.¹⁴⁾ 보험사기 적발인원 중 30~50대 연령층이 30,540명으로 대부분이며, 65세 이상 고령층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¹⁵⁾ 전체 보험사기

7) 이정만·조홍중,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합리적 형사정책”, 비교법연구 제17권 제3호,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15, 151면.

8) 전현욱, “자동차 보험사기에 대한 형법적 대응 연성사기를 중심으로”, 안암법학 제36권, 안암법학회, 2011, 243면.

9) 이정만·조홍중, 위의 논문, 151면.

10) 김선협, 앞의 각주 3)의 논문, 84-85면.

11) 15년 상반기 3,105억원, 16년 상반기 3,480억원, 17년 상반기 3,703억원으로 집계되었다.

12) 고도화된 조사 인프라를 활용한 적발기법의 발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시행 및 수사기관과의 긴밀한 공조 강화 등으로 적발금액이 증가한 것으로 평가된다. 위의 인프라에는 상시감시시스템(고위험군 상시 실시), IFTA고도화(사회관계망 분석기법 도입)가 있다.

13) 손해보험 중목이 전체 보험사기의 90.1%를 차지하고 있으며, 생명보험 중목은 9.9% 수준이다. 이것은 보험사고의 원인이 사망, 상해, 장애, 폭발, 폭발, 충돌, 멸실, 도난 등으로 다양하고, 손해액 평가방법이 복잡하여 보험사기가 개재할 가능성이 크다.

14) 보험사기의 과반 이상을 점유하던 자동차보험 사기 비중이 감소하는 추세가 지속되어, 전체 보험사기의 44.4%까지 감소했다. 이것은 블랙박스, CCTV 설치 등 사회적 감시망 확대가 보험사기 예방효과로 이어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적발인원중 남성은 68.1%인 30,057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06명 증가하였고, 비중은 감소 추세이다. 여성은 31.9%인 14,084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79명 증가하였고, 비중도 증가 추세이다.¹⁶⁾ 보험사기자 비중은 회사원(23.3%), 무작·일용직(12.1%), 전업주부(10.0%), 자영업(8.9%) 순으로 구성비는 전년 동기와 유사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¹⁷⁾

Ⅲ.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특별법 입법과정

2013년 8월 27일 박대동의원이 대표발의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안을 제320회 국회(정기회) 제10차 정무위원회(2013.12.6.)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다. 2012년 8월 1일 안효대의원이 대표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315회 국회(임시회)제1차 정무위원회(2013.4.10.)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다. 2013년 12월 23일 조원진의원의 대표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직접 회부하였다. 제340회 국회(임시회)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6.2.18.)에서 이상 3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다. 제340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2016.2.18.)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하였다.¹⁸⁾

15) 14년 4.5%, 15년 5.6%, 16년 5.8%, 17년 6.4%로 고령자의 비중은 증가 추세이다.

16) 남성은 음주·무면허운전, 운전자 바뀌치기 등 자동차보험사기 비중이 74.8%로 높고, 여성은 허위과다입원, 고지의무위반 등 병원 관련 보험사기 비중이 45.3%로 높은 경향이다.

17) 금융감독원, “2017년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금액 3,703억원, 역대 최고금액 적발”, 2017.10.20, 1-4면.

18) 정무위원장,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안(대안)”, 2016.3.

2. 특별법 제안이유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2010년 3,746억원에서 2014년 5,997억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보험사기의 증가현상은 보험금 누수를 통해 보험회사의 경영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선량한 다수의 보험계약자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보험이 갖는 사회적 기능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그러나 보험사기를 별도의 범죄로 구분하고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는 외국의 입법례와는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사기죄와 동일하게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하고 있다. 이에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특별법을 마련하여 건전한 보험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보험사기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함으로써 사회적 손실을 경감시키려는 것이다.

3. 특별법 주요내용

(1) 보험사기의 개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따르면 “보험사기행위”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제2조). 그러나 특별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제정안 제2조 제1호에 보험사기행위의 정의 규정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다. 가. 보험사고의 원인·시기·내용 등을 조작하거나 피해의 정도를 과장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 나. 고의로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시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 다. 고의로 피보험자를 사상(死傷)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 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었다. 보험사기는 계획적으로 보험사기를 야기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는 ‘적극적 보험사기(경성 보험사기)’와 이미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 과장하여 보험금을 과잉 청구하는 등의 ‘소극적 보험사기’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제정안은 이러한 보험사기의 유형을 모두 포괄하여 규정하고 있다.¹⁹⁾ 다만 법무부는 제정안 제2조 제1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보험사기행위’에 해당되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고, 그 결과 보험금청구권을 박탈당하거나 지급받은 보험금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게 될 수 있는 등 수범자에 대한 신체의 자유 및 재산권

19) 구기성,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안 검토보고서”, 2013.12, 8면.

등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지적과, 안 제2조 제1호 가목의 “~등을”은 그 대상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여 명확성의 원칙에 반할 우려가 있고, 안 제2조 제1호 가목의 “피해의 정도를 과장”하는 행위 및 제2조 제1호 라목의 “그밖의 부정한 방법”은 해석에 따라 그 처벌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²⁰⁾ 특별법은 구체적으로 나열되는 유형만을 보험사기행위로 하지 않은 것은 제정안 가운데 나목의 ‘고의로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시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와 다목의 ‘고의로 피보험자를 사상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에서 피해정도를 고의로 과장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까지 사기죄로 처벌하게 되면 처벌대상이 지나치게 확대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라는 포괄적인 방식을 택하였다(제2조).²¹⁾

(2) 보험사기행위의 보고의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 또는 보험금 지급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보험계약자등”이라 한다)의 행위가 보험사기행위로 의심할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4조). 제정안은 보험사기행위로 의심할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지체없이 금융감독원에 보고하도록 하며,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 보험계약자 등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고 있다(제5조 제1항2항).²²⁾ 이러한 보험회사의 보험사기행위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보고 및 면책 조항이 보험금 지급의무의 해태로 연계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동 조항을 삭제하게 되었다.²³⁾

(3) 보험계약자 보호

과거 기초서류(약관)을 위반²⁴⁾하여 보험금을 과소지급·미지급할 경우 연간 수

20) 구기성, 앞의 보고서, 11면.

21) 김용재, “무역보험 활성화 전략에 관한 연구: 무역보험을 악용한 사기 예방 방안을 중심으로”, 무역보험연구 제12권 제4호, 한국무역보험학회, 2011, 39면.

22) 구기성, 위의 보고서, 12면.

23) 유주선, “독일의 보험사기방지에 대한 입법적 대책과 우리의 보험사기특별방지법”, 보험법연구 제10권 제1호, 한국보험법학회, 2016, 297면.

입보험료 20%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였다(보험업법 제196조).²⁵⁾ 여기서 과징금이 수입보험료 기준으로 책정되어 보험회사의 부당이득 대비 제재 수준이 미흡하며, 약관에 따라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보험금 지급 지체의 경우 사실상 제재가 어려운 맹점이 있었다.²⁶⁾ 이에 따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보험금 지급 지체·삭감·거절시 보험회사 제재 강화 규정을 명문화하게 되었다(제5조 제2항). 더불어 보험회사는 보험사고 조사 과정에서 보험계약자등의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동법 제5조 제1항). 제정안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보험사기행위 조사 과정에서 보험계약자등의 개인정보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고(제6조 제1항), 보험회사는 보험사기행위 조사를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금 지급을 미루거나 보험계약자·피보험자·보험수익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동법 제6조 제2항). 따라서 ‘보험사기행위’를 ‘보험사고’로 변경하였고,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지체 또는 거절하거나 삭감하여 지급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과 함께, 보험사고 조사의 사유를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함을 요구하였다.²⁷⁾

(4) 수사기관 등에 통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등의 행위가 보험사기행위로 의심할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6조 제1항).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한 경우에는 해당 보험사고와 관련된 자료를 수사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6조 제2항). 위의 제6조 수사기관 등에 대한 통보는 극히 제한된 수사기관의 업무에 있어 전문성을 갖추고 보험범죄 전담 합동대책반이 요구되는 이

24) 기초서류, 사업방법서 보험약관 산출방법서(보험료 책임준비금) (보험업법 제5조 제3호) 보험업법 제127조의3(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 의무) 보험회사는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5) 2017년 4월 18일에 일부개정되었다. 현재는 연간 수입보험료 50%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26) 약관 등에 따른 경우 등 예외적 경우에만 동법 위반으로 보지 않아 과태료 미부과대상이다. 과태료 미부와 대상인 경우에도, 약관과 법령에 따른 보험소비자의 민사적 보험금 청구권 행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금융위원회,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 보험사기 뿌리뽑겠습니다”. 2016.9.30., 3-4면.

27) 유주선, 앞의 논문, 297면.

시점에 보다 더 관련 내용을 추가적으로 규정하거나 최소한 시행령으로 위임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²⁸⁾

(5) 수사기관의 입원적정성 심사의뢰 등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보험사기행위 수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자등의 입원이 적정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그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7조 제1항).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제1항에 따른 의뢰를 받은 경우 보험계약자등의 입원적정성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수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7조 제2항). 이는 보험사기 조사수단의 확충 지원을 위한 제도지원의 측면에서 신설된 것이다.²⁹⁾ 그러나 동법 제7조는 “입원이 적정한 것인지 여부”의 의미로 “입원 적정성”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표현이 아니어서 법문에 대한 이해를 어렵게 할 소지가 있으므로, 그 의미를 풀어 쓰되, 필요하다면 약칭을 사용하는 방안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³⁰⁾

(6) 보험사기죄 신설과 가중처벌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따르면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8조). 상습으로 위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고, 동법 제10조에 따르면 보험사기범 및 상습범의 미수범도 처벌한다(제9조). 더불어 제8조 및 제9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보험금의 가액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가중처벌하고 있다(동법 제11조). 보험사기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동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보험사기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동법 제11조 제1항 제2호)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8) 박숙환, “보험사기특별법의 개선방안에 관한 검토”, 교정복지연구 제44호, 한국교정복지학회, 2016, 39면.

29) 유주선, 위의 논문, 298면.

30) 박숙환, 위의 논문, 39면.

(7) 비밀유지의무와 권한의 위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따르면 보험사기행위 조사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해당 업무에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수행 중 취득한 정보나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2조). 위 규정에 위반하여 직무수행 중 취득한 정보나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동법 제14조). 금융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동법 제13조).

IV.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의 문제점 및 입법적 보완

1. 보험관계 업무 종사자의 보험사기에 가담에 대한 처벌.

보험설계사 등 보험관계 업무 종사자가 보험 전문지식을 악용하여 직·간접적으로 보험사기에 관여하는 사례가 꾸준히 적발되는 문제³¹⁾가 제기되어 2014년 1월 14일 보험업법에 보험관계 업무 종사자의 보험사기 행위에 대한 행정제재 근거 조항이 신설되었다. 따라서 보험사기행위에 연루된 보험관계 업무 종사자³²⁾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 및 등록취소를 할 수 있게 되었다(보험업법 제86조 제2항, 제88조의 제2항, 제90조 제2항, 제102조의3, 제190조).³³⁾ 그러나 보험관

31)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 사례를 살펴보면, 첫째 보험설계사가 본인과 가족을 동원하여 허위 과장 입원하는 경우, 둘째 보험설계사가 지인과 공모하여 허위로 무릎수술 유도하는 경우, 셋째 가족보험 담당자가 가족주와 공모하여 사고를 조작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금융감독원, “보험사기에 연루된 보험업종사자는 보험업계에서 퇴출”, 금융감독정보, 2014.

32) 보험업법 제102조의3(보험 관계 업무 종사자의 의무)에 따르면 보험회사의 임직원,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손해사정사, 그 밖에 보험 관계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가 있는 자로 하여금 고의로 보험사고를 발생시키거나 발생하지 아니한 보험사고를 발생한 것처럼 조작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도록 하는 행위, 2.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가 있는 자로 하여금 이미 발생한 보험사고의 원인, 시기 또는 내용 등을 조작하거나 피해의 정도를 과장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33) 정무위원장,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13.12, 3면.

계 업무 종사자의 보험사가 가담에 대한 행정제재가 미약하여 실효성이 부족한 상태이며, 보험관계 업무 종사자의 보험사 가담은 감소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³⁴⁾ 이러한 보험관계 업무 종사자에게 보험사에 어떤 형태로 어느 정도 가담하였는가에 따라 행정적 제재를 넘어서 다양한 형사법적 처벌의 가능성이 존재하므로,³⁵⁾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상 보험관계 업무 종사자의 처벌조항의 필요성이 논의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현행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보험회사 전현직 임직원에 대한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을 담은 법안이 발의되었다(안 제11조제2항 및 동조 제3항 신설).³⁶⁾

생각건대, 현행 형법·특정경제기중처벌법률, 상법, 민법, 보험업법에도 보험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 명문화되어 있다.³⁷⁾ 이러한 기존의 법률로는 보험사의 대처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제정되게 되었다. 따라서 고도로 지능화·조직화되는 보험사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상 법적 공백을 보완하여 체계성을 갖출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보험관계 업무 종사자가 연루된 보험사에 대하여 보험업법에 행정 제재만을 규정할 뿐만 아니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구체적인 처벌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보험관계 업무 종사자에 대하여 보험업법에만 행정 제재를 두면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관련 규정을 두지 않는다면 입법체계적인 면에서 상당한 불균형을 초래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보험관계 업무 종사자에 대한 현행 보험업법에서의 행정제재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추가적인 처벌규정의 도입은 이중규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34) 군 특수부대 출신들이 주축이 된 보험 모집인들이 후배 대원들에게 보험 가입을 권유 2~3개월 사이에 다수의 보험을 경유계약 수법으로 순차 보험계약을 시켰다. 가입한 피보험자들은 보험 모집인과 연계된 병원브로커를 통해 의사에게 장해진단을 발급받았다. 경찰청 브리핑, “군 특수부대 출신 장해보험 사기사건 중간 수사결과”, 2016.5.9. 2017년 1월 9일 금융위·금감원은 보험사에 연루된 보험설계사 4명에 대하여 첫 등록취소 등의 제재조치를 취하였다. 금융위원회, “보험설계사의 보험사기 행위에 대한 첫 등록취소 조치”, 2017.1.9.

35) 보험관계 종사자가 처음부터 보험사기범과의 공모를 통하여 보험사고를 발생시키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보험관계 종사자에게 보험사기의 공동정범이 성립될 것이다. 보험관계 업무 종사자가 단순히 보험사기를 시주한 경우에는 보험사기의 교사범이, 보험사고 등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부당한 보험금청구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이를 도와주거나 묵인한 경우에는 보험사기의 방조범이 성립될 수 있다. 전지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제안”, 비교형사법연구 제19권 제3호,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17, 54면.

36) 김관영의원 대표발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12.20.

37) 김선협, 앞의 각주 3)의 논문, 98면.

2.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보험계약자 등을 보호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없이 보험사고 조사를 이유로 보험금의 지급을 지체 또는 거절하거나 삭감하여 지급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금융위원회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5조, 제15조). 이러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특별한 사유없이 보험사고 조사 등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지체·거절·삭감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³⁸⁾하고 있어 보험계약자 등을 보호하기 위한 상징적인 의미³⁹⁾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없이 보험금 지급의 지체, 거절, 삭감을 금지하고 있어, 역으로 해석하면 대통령령으로 예외사유를 정할 수 있도록 한 결과가 되어 오히려 보험계약자의 권익침해의 여지가 남을 수 있다(제5조 제2항,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가.목⁴⁰⁾).⁴¹⁾ 이는 금융감독원의 조사결과, 나아가 그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등과 무관하게 보험회사의 독자적인 판단만으로 보험금의 지급을 지연·거부하거나,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할 수 있게 되는 문제가 있다고 한다.⁴²⁾ 위 법률규정은 보험계약자 등의 보호가 아니라 사실상 보험사를 위한 규정이 될 위험성이 내재하고 있으므로⁴³⁾, 이에 보험금 지급지체 허용 사유 적용 및 구체화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⁴⁴⁾ 구체적으로 첫째, 보험금 지급지체 허용 사유에 해당하는 ‘통계적·객관적으로 보험사기 행위로 뚜렷하게 의심되는 경우’를 신중하게 제시할

38) 송윤아, “보험모집종사자의 보험사기 적발현황”, KIRI Weekly, 보험연구원, 2011, 13면.

39) 이양복,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관한 논의와 개선 방향”, 강원법학 제52권,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7, 498면.

40)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령 제3조(보험금 지급지체 사유)에 따르면 법 제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보험회사가 보험사고 조사 과정에서 법 제4조에 따른 보험계약자등의 행위가 보험 사기행위로 의심할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이 경우 보험금의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법 제4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한 경우, 나. 법 제6조에 따라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를 말한다.

41) 전지연, 위의 논문, 37면.

42) 오병두,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안”, 형사정책 제28권 제3호, 한국형사정책학회, 2016, 309-310면.

43) 보험회사가 선의의 보험금 청구권자를 보험사기범으로 의심하여 소송으로 인한 보험금 지연을 가져다 줄 수 있다.

44) 송윤아, 앞의 보고서, 13면.

필요가 있다. 둘째,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만으로도 보험금 지급지체의 합법적인 사유가 되는 바, 고발 또는 수사의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⁴⁵⁾ 보험금 지급지체와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등의 보호에 관한 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보험사에 대하여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여 보험사 역시 보험사기 조사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미루거나 거절하는 것에 대해 신중하게 판단토록 해 보험가입자의 권익향상에 기여할 필요성(안 제15조의2신설) 및 금융위원회에 보험사기 조사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미루는 경우에 대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한다(안 제13조의2신설).⁴⁶⁾

생각건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관련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보험금 지급에 있어 보험계약자 등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현행 보험업법에 따르면 기초서류인 약관을 위반하여 보험금 지급을 지체·거절하는 경우 연간 수입보험료 50%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96조 제1항). 게다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도 지급 지체·거절사유와 관련된 규정이 존재하고 있다. 이렇듯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 지체·거절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등을 좀더 두텁게 보호하고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상 보험회사의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보험회사에 대한 이중규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3. 보험사기행위 정의의 구체적인 유형화 및 예비·음모의 처벌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따르면 보험사기죄는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말한다(제2조). 여기서 보험사기죄의 기망행위를 보험사고로 한정함으로써 보험계약사기에 대해서는 특별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존과 같이 개별적 판단에 따르게 하고 있다. 또한 행위 태양에 따라 보험사기행위의 내용을 구체화한 당초의 의원 법률안⁴⁷⁾과 같

45) 송윤아, 위의 보고서, 13면.

46) 김관영의원 대표발의, 앞의 법률안, 2016.12.20.

47) 이른바 행위 태양에 따라 보험사기행위의 정의를 보험사고의 원인·시기·내용을 조작하거나 피해의 정도를 과장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 고의로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시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 고의로 피보험자를 사상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청

이 구체적인 보험사기의 유형도 반영되지 않았다.⁴⁸⁾ 이러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처벌 규정은 기존의 형법상 사기죄 규정을 그대로 모방한 것으로, 벌금을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한 정도이다. 따라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으로서의 의의를 찾기가 어렵다고 보고 있다.⁴⁹⁾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신설이나 벌금적인 부분적인 강화만으로는 보험사기의 예방에 효율적이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⁵⁰⁾ 이러한 이유로 보험사기죄의 예비·음모를 규정하여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⁵¹⁾ 우리 형법 제28조에 따르면 “예비의 음모 또는 예비행위가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현행 형법상 사기죄는 예비·음모에 대하여 처벌하고 있지 않고 있다. 이러한 보험사기죄에 예비·음모의 신설은 형법상 다른 사기죄와의 입법 체계상 불균형을 가져올 수 있다. 더불어 보험사기죄의 예비·음모 처벌은 일반사기죄에 비하여 과잉처벌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이 밖에 우리나라 법률체계상 정합성 외에 민사적 제재의 해결보다는 형사적 제재의 문제해결이 과연 적절한지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도 있다. 모든 보험의 세계적 중심지인 영국⁵²⁾은 보험사기죄에 대하여 형사적 제재를 두고 있지 않고, 다만 민사적 배상 규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형사적 제재 위주의 보험사기 예비·음모죄를 규정하지 않은 영국⁵³⁾이 오히려 보험사기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있지 않다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

생각건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상 보험사기죄의 정의를 협소하게 규정함으로써, 기망에 의한 보험계약, 사기에 의한 초과보험 및 중복보험의 체결 등과 같은 보

구하는 행위로 살펴볼 수 있다.

- 48) 김슬기, “제정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대한 형사법적 검토”, 연세법학 제27권, 연세법학회, 2016, 79면.
- 49) 전지연, 앞의 논문, 43면; 김슬기, 위의 논문, 80면; 오병두, 위의 논문, 307면.
- 50) 전지연, 앞의 논문, 43면.
- 51) 노명선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의 제정 의미와 운영과제”, 손해보험 통권 제569호, 손해보험협회, 2016, 17면; 전지연, 위의 논문, 51면. 이에 대하여 19대 국회에서 김학용의원은 보험사기죄에 보험사기를 예비단계에서부터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입법안을 발의했다. 김학용의원 대표발의, “형법일부개정법률안”, 2013.4.15.
- 52) 구종순, 「해상보험」, 박영사, 2010, 63면; 김선협, 앞의 각주 3)의 논문, 98면.
- 53) 세계적으로 보험사기의 규모를 살펴보면, 미국은 960억 달러(한화 105조원), 영국은 32억 유로, 독일은 40억 유로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모럴헤저드의 끝판왕, 보험사기 홈페이지(<http://www.lifentalk.com/930>). (2017.12.22).

험사기행위를 포섭하지 못하는 법적 공백이 발생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보험사기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해외의 법률을 모델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을 제정하였다. 이러한 법률의 모델인 독일 및 오스트리아에서는 예비행위를 보험사기죄의 독자적인 형태로 「형법」에 편입하여 처벌하고 있는 상태이다.⁵⁴⁾ 따라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도 형사적 제재인 예비·음모 규정을 둬으로써, 보험사기의 사전모의 단계에서부터 보험사기 처벌에 대한 공백을 최소화하고 잠재적 보험사기범들에게 중대한 범죄라는 경각심을 높여 보험사기를 예방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4. 입원적정성 심사의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와 심사업무 비용 분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보험사기행위 수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자들의 입원이 적정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그 심사를 의뢰할 수 있고, 의뢰를 받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보험계약자들의 입원적정성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수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제7조 제1항, 제2항). 일반적으로 입원적정성 심사의 성격을 살펴보면 수사상 감정위촉과 유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⁵⁵⁾ 입원적정성 심사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⁵⁶⁾ 이러한 입원적정성 심사와 관련하여 객관성 및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기준이나 매뉴얼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⁵⁷⁾ 더불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적정성 심사비용 분담에 관하여 논란이 있어왔다. 이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이 심사평가원에 입원적정성 심사를 의뢰하는 경우 그 업무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하여야 한다는 법안⁵⁸⁾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적정성 심사비용을

54) 김학용의원 대표발의, 위 의 법안, 2013.4.15.

55) 전상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2017.2, 7면.

56) 김계환, “보험사기 특별법의 문제점과 향후 의료기관의 대응방안”, 메디컬타임즈, 2016.8, 31면.

57) 따라서 추후에 입법의 개정을 통하여 보완할 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심평원의 인력 및 예산의 부족한 상태이다. 우선 의료기관의 건강보험요양급여 청구에 대한 심사의 경우와 달리 그 심사결과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심사절차에서 의견진술이나 자료제출 기회도 부여되고 있지 않다. 김계환, 위 의 보고서, 32면.

58)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전 국민이 부담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심사기구로, 자동차 보험 심사 업무 등을 위탁받아 처리하고 있으면서 수수료 및 인건비 등을 지급받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수사기관이 보험사기 행위 수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자 등의 입원적정성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사기방지기금을 설치하되, 그 재원은 민간 보험회사의 출연금으로 조성하게 해야 한다는 법안⁵⁹⁾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이다. 이러한 입원적정성 심사비용 분담과 관련하여 수사절차를 위한 사법의 관점에서 이해당사자인 보험회사가 심사비용을 부담할 경우, 그 심사 결과의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고 한다.⁶⁰⁾ 입원적정성 심사업무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본래적 업무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국민건강보험법은 심사평가원의 업무 중 하나로 '다른 법률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비용의 심사 또는 의료의 적정성 평가에 관하여 위탁받은 업무를 명사하고 있으므로(법 제63조 제1항 제5호), 입원적정성 심사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의료 적정성 평가 관련 위탁업무에 해당하므로, 위 업무를 위하여 소요된 비용에 대해서는 위탁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법 제67조 제2항). 이때 수수료는 심사평가원 원장이 업무를 위탁한 자와 계약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동법 시행규칙 제38조 제2항).⁶¹⁾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입원적정성 심사 업무가 수사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다는 점, 입원적정성 심사는 업무의 본질이 전문가의 감정과 유사하다는 점, 수사절차에 있어서 사법의 공정성 관점에서 수사기관이 수사비용을 지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위 심사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건강보험료가 상승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입원적정성 심사비용을 국가예산편성을 통하여 수사기관이 부담하는 것이 원론적 측면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한다.⁶²⁾

생각건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수사기관의 입원적정성 심사의뢰의 규정을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그 심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심사 의뢰에 대한 수수료에 대한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에 다른 위탁업무 등의 수행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수사기관의 입원적정성 심사의뢰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이 그 업무의 시행에 필요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안 제7조제3항 신설). 김승희의원 대표발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12.

59)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따른 보험사기행위의 조사방지 처벌은 보험계약자 등의 권익 보호와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것이므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고유 업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라 보험사기방지와 관련된 업무를 하게 되었으므로 이에 필요한 재원을 민간 보험회사의 부담으로 하는 것이 형평에 부합한다. 만약 민간 보험회사가 보험사기 범죄에 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적정성심사에 대한 재원을 부담하지 않는다면 국민건강보험료로 충당하게 되면 결국 국민보험료가 인상될 수 밖에 없다. 보험사기를 위한 입원적정성 심사를 것은 보험사의 업무임에도 국가 세금으로 충당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정태욱의원 대표발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7.2.2.

60) 전상수, 앞의 보고서, 9면.

61) 전상수, 위의 보고서, 10면.

62) 전상수, 위의 보고서, 11면.

두고 있으면서, 심사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담보하는 기준과 심사업무 분담 비용에 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는 것은 법적 공백으로 인한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현재 민간보험 사기범죄 수사를 위한 입원적정성 심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고유 업무와 그 성격을 달리하고 있다. 따라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민간보험회사의 입원적정성 심사를 수행하면서 소요 비용을 건강보험에서 부담하고 있는 것은 민간보험회사에 특혜를 주는 것과 같으므로 불합리하다고 판단된다. 반면에 입원적정성 심사 업무는 수사절차의 일환으로 업무의 본질이 전문가의 감정과 유사하며 수사절차에 있어서 사법의 공정성 관점 등을 살펴보면 수사기관이 수사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종합해보건대, 민간보험회사, 수사기관에서 50:50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5. 보험사기방지 전담기구 상설화 및 수사인력의 확충

매년 고도로 지능화·조직화되는 보험사기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2009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4부에 정부합동보험범죄대책반이 설치되었다. 정부합동보험범죄대책반은 금융감독원, 보험회사, 검경,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정부합동보험범죄전담대책반, 국토교통부, 근로복지공단의 직원들로 구성된 보험사기 수사 종합컨트를 기관이다.⁶³⁾ 현재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는 경제범죄전담부서로 모든 경제범죄와 관련된 사건을 맡고 있다.⁶⁴⁾ 따라서 다양한 경제범죄⁶⁵⁾의 일부분인 보험사기범죄를 특화하여 집중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는 체계성이 부족한 상황이며, 공무원의 특성상 순환보직으로 인하여 수사점사의 보험사기범죄 수사의 전문성을 갖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더불어 보험사기범죄 수사 종합컨트를 기관인 정부합동보험범죄대책반은 한시적인 임시적 기관이며, 법적근거도 없는 상태⁶⁶⁾여서 불안정한 지위를 가지고 있다. 생각건대, 보험사기에 대처

63) 금융감독원 보험방지센터 홈페이지(<http://insucop.fss.or.kr/fss/insucop/task02.jsp>). (방문 2017. 12. 10).

64)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홈페이지(http://www.spo.go.kr/seoul/intro/floor_information.jsp). (방문 2017.11.29.)

65) 사기죄, 공갈죄, 횡령죄, 배임죄, 재산국외도피의 죄, 중재 등의 죄, 저축관련 부당행위의 죄, 무인가 단기금융업,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의 죄, 알선수재의 죄, 사금융알선이 있다. 위키백과 홈페이지 (<https://ko.wikipedia.org/wiki/%EA%B2%BD%EC%A0%9C%EB%B2%94%EC%A3%84>). (방문 2017.12.10).

66) 당초 '09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하였으나, 지속적인 대응을 위해 2년마다 연장하여 현재

하기 위해서는 전문화·조직화된 보험사기 전담기구의 상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정부합동보험범죄대책반을 현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4부가 아닌, 대검찰청에 보험사기범죄를 특화하여 수사할 수 있는 전담부서를 상설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각 지방검찰청 및 지청에도 보험사기범죄 전담부서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전문화된 보험사기범죄 수사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문수사인력 양성기관의 신설도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위에서 언급한 것을 바탕으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보험사기 전담기구 및 전문수사인력 양성기관에 관한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현재 보험사기에 대한 제1차적인 조사는 보통 보험회사의 특수조사팀(SIU)에서 담당한다. 보험회사의 특수조사팀은 수년간 범행현장에서 수사를 담당하였던 전직 수사관들로 구성되어 있어, 보험사기의 단서를 찾거나 조사를 벌이는 데에 매우 치밀하고 정확하다.⁶⁷⁾ 보험회사의 특수조사팀이 보험사기를 인지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해당 보험사기에 대한 내용을 보고하고 금융감독원은 이를 분석한 후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하거나 또는 보험사의 특수조사팀이 직접 수사기관에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과정을 거친다.⁶⁸⁾ 그러나 여전히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보험회사의 특수조사팀이 행하는 보험사기 여부에 대한 조사는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⁶⁹⁾ 이에 대하여 보험회사에 보험사기조사기구의 설치·운영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의무화하면 보험사기에 대한 조사활동을 통해 보험사기로 의심할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 금융감독원⁷⁰⁾에 보고하도록 하여 관련기관과의 상호공조를 통한 바탕으로 보험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한다.⁷¹⁾ 그러나 민간인인 보험회사에게 별다른 제한규정 없이 보험범죄에 대한 수사업무의 일부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 인권침해 문제의 소지가 크고, 전문성이 있는 행정공무원에게 업무 관련 수사권한을 부여하는 특별사법경찰관 제도⁷²⁾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한다. 더불어 조사과정에서의 보험소비자

⁶⁷⁾ 까지 활동하고 있다. 구기성, 앞의 보고서, 11면.

67) 전지연, 앞의 논문, 48면.

68) 오병두, 앞의 논문, 309면; 전지연, 위의 논문, 47면.

69) 박세민, 앞의 논문, 166-167면.

70) 금융감독원은 무자본 특수법인이며,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기관이다.

71) 구기성, 앞의 보고서, 13면.

72) 법무부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특사경법’)상 범죄 사실에 대한 수사권을 민간인에게 부여하는 경우는 극히 제한적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그 직무범위

의 권리 침해의 가능성이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⁷³⁾ 생각건대, 보험회사 보험특수조사팀의 조사권한 부여에 관한 논의를 신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현재 보험사기범죄 조사에 대하여 수사기관은 전문성⁷⁴⁾ 및 충분한 인력⁷⁵⁾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이러한 이유로 각 보험회사들은 수사기관만으로 매년마다 증가하고 있는 지능화·조직화된 보험사기 대처에 한계가 있다 판단하여 전직 수사기관의 요원을 채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보험회사 특수조사팀에 조사권을 부여하는 방안보다는, 검·경에 전문성 및 체계성을 갖춘 보험사기범죄 전담부서를 신설하여 수사인력을 확충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V. 결론

2016년 3월 29일에 제정되어, 동년 9월 30일에 시행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우리사회에 만연한 보험사기범죄의 대응에 있어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앞서 II 장의 2017년 상반기 보험사기 통계조사를 살펴보았듯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시행 이전보다 오히려 보험사기는 증가하고 실정이다. 따라서 보험사기 방지의 실효성에 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보험사기에 대하여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개별적 사항을 종합적으로 담기에는 아직까지 입법기술적으로 부족한 면이 없지 않다. 이러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나아가야 할 정책적 방향으로 몇 가지 문제점을 고찰하여 살펴보았다.

이러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입법기술적 개선점으로 첫째, 보험관계 업무 중 사자의 보험사기에 가담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을 검토하였다. 보험관계 업무 중

또한 필요 최소한으로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의 근무하는 정부기관이 아니면서 특사경으로 지명된 기관은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유일하고, 직무 범위로 '관할지역에서 발생하는 '경범죄처벌법'의 일부 범칙행위의 현행법에 대한 수사로 제한적이다. 그 외 민간인이 특사경으로 지명된 경우에는 '선박의 선장 및 항공기의 기장과 승무원'이 있으나, 이 경우에도 '해선 및 항공기 안에서 발생하는 범죄로 직무 범위로 제한되어 있다.

73) 구기성, 위의 보고서, 13-14면.

74) 현재 보험사기범죄에 대하여 경찰은 전담부서가 없는 실정이다. 다만 지능범죄수사과, 교통범죄수사팀, 강력계 등에서 처리하고 있다. 검찰도 보험사기범죄 전담부서가 없는 실정이다.

75) 경찰에서는 보험사기범죄 수사의 충분한 인력이 확보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특별단속기간을 통하여 경찰은 수사인력을 대폭 확충하여 보험사기범죄를 단속하고 있다.

사자는 일반인보다 보험지식이 많고 보험회사의 업무처리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의 보험상품 특성 및 지급심사절차의 허점을 이용하여 보험사기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보험관계 업무 종사자가 연루된 보험사기에 대하여 보험업법에 행정 제재만을 규정할 뿐만 아니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구체적인 처벌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그러나 보험관계 업무 종사자에 대한 현행 보험업법에서의 행정제재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추가적인 처벌규정의 도입은 이중규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둘째,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보험계약자 등을 보호할 필요성을 검토하였다. 현행 보험업법에 따르면 기초서류인 약관을 위반하여 보험금 지급을 지체·거절하는 경우 연간 수입보험료 50%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96조 제1항). 게다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도 지급 지체·거절사유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고 있다. 이렇듯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 지체·거절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등을 좀 더 두텁게 보호하고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보험회사에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보험회사에 대한 이중규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셋째, 보험사기행위 정의의 구체적인 유형화 및 예비·음모의 처벌의 필요성을 검토하였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상 보험사기죄의 정의를 협소하게 규정하고 있어 보험계약사기와 관련해서는 법적 공백이 발생되고 있으므로, 향후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보험사기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해외의 법률을 모델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을 제정하였다. 이러한 법률의 모델인 독일 및 오스트리아에서는 보험사기죄의 예비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형사적 제재인 예비·음모 규정을 둬으로써, 보험사기의 사전모의 단계에서부터 보험사기 처벌에 대한 공백을 최소화하고 잠재적 보험사기범들에게 중대한 범죄라는 경각심을 높여 보험사기를 예방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넷째, 입원적정성 심사의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와 심사업무 비용 부담의 필요성을 검토하였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수사기관의 입원적정성 심사의뢰의 규정을 두고 있으면서, 심사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담보하는 기준과 심사비용 부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법적 공백으로 인한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입원적정성 심사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고, 심사비용 부담과 관련하여 민간보험회사, 수사

기관의 분담비율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보험사기방지 전담기구 상설화 및 수사인력의 확충의 필요성을 검토하였다. 정부합동보험범죄대책반은 보험사기 수사 종합컨트롤 기관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4부에 설치되어 있다. 현재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는 경제범죄전담부서로 모든 경제범죄와 관련된 사건을 맡고 있어, 보험사기범죄를 특화하여 집중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는 체계성이 부족한 상황이며, 공무원의 특성상 순환보직으로 인하여 수사검사의 보험사기범죄 수사의 전문성을 갖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정부합동보험범죄대책반은 임시적 기관이며, 법적근거도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정부합동보험범죄대책반을 현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4부가 아닌, 대검찰청에 보험사기범죄를 특화하여 수사할 수 있는 전담부서를 상설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 보험사기범죄 조사에 대하여 수사기관은 전문성 및 충분한 인력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이러한 이유로 각 보험회사들은 수사기관만으로 매년마다 증가하고 있는 지능화조직화된 보험사기 대처에 한계가 있다 판단하여 전직 수사기관의 요원을 채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보험회사 특수조사팀에 조사권을 부여하는 방안보다는, 검경에 전문성 및 체계성을 갖춘 보험사기범죄 전담부서를 신설하여 수사인력을 확충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 구기성,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안 검토보고서”, 2013.12.
- 금융감독원, “2017년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금액 3,703억원, 역대 최고금액 적발”, 2017.10.20.
- 금융감독원, “보험사기에 연루된 보험업종사자는 보험업계에서 퇴출”, 금융감독정보, 2014.
- 금융위원회,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 보험사기 뿌리뽑겠습니다”. 2016.9.30.
- 김계환, “보험사기 특별법의 문제점과 향후 의료기관의 대응방안”, 메디컬타임즈, 2016,8.
- 김관영의원 대표발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12.20.
- 김선협, “특집논문-현대법의 새로운 과제: 보험사기죄 신설에 관한 고찰”, 홍익법학 제17권 제1호,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 김선협, “자율주행자동차 보험사기에 관한 고찰”, 보험법연구 제10권 제1호, 한국보험법학회, 2016.
- 김슬기, “제정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대한 형사법적 검토”, 연세법학 제27권, 연세법학회, 2016.
- 김승희의원 대표발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12.5.
- 김용재, “무역보험 활성화 전략에 관한 연구. 무역보험을 악용한 사기 예방 방안을 중심으로”, 무역보험연구 제12권 제4호, 한국무역보험학회, 2011.
- 김학용의원 대표발의, “형법일부개정법률안”, 2013.4.15.
- 노명선,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의 제정 의미와 운영과제”, 손해보험 통권 제569호, 손해보험협회, 2016.
- 노명선, “형법상 보험사기죄 신설의 필요성(下)”, 손해보험 통권 제546호, 손해보험협회, 2014.
- 박세민, “보험사기에 대한 현행 대응방안 분석과 그 개선책에 대한 연구”, 저스티스 통권 제111호, 한국법학원, 2009.
- 박숙완, “보험사기특별법의 개선방안에 관한 검토”, 교정복지연구 제44호, 한국교정복지학회, 2016.
- 송윤아, “보험모집종사자의 보험사기 적발현황”, KIRI Weekly, 보험연구원, 2011.

- 오병두,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안”, 형사정책 제28권 제3호, 한국형사정책학회, 2016.
- 유주선, “독일의 보험사기방지에 대한 입법적 대책과 우리의 보험사기특별방지법”, 보험법연구 제10권 제1호, 2016.
- 이양복,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관한 논의와 개선 방향”, 강원법학 제52권,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7.
- 이욱, “기망행위로 인한 과다보험금 수령과 사기죄의 성립 범위-대법원 2012.1.26. 선고2009도6690판결”, 손해보험 통권 제527호, 손해보험협회, 2012.
- 이정민·조홍중,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합리적 형사정책”, 비교법연구 제17권 제3호,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15.
- 전상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2017.2.
- 전지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제안”, 비교형사법연구 제19권 제3호,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17.
- 정무위원장,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안(대안), 2016.3.
- 정무위원장,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13.12.
- 정태욱의원 대표발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7.2.2.
- 황현영,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입법적 과제”, 이슈와 논점 제1092호, 국회입법조사처, 2015.

<Abstract>

A Study on the Improvement Plan of “Special Act on Insurance Fraud Prevention”

Kim, Seon Hyub

The current criminal law, the specific economic enforcement penal law, the commercial law, the civil law, and the insurance business law also stipulate regulations to prevent insurance fraud. As a result of the above laws, it was determined that there is a limit to dealing with highly intelligent and organized insurance fraud, and the Special Act on Insurance Fraud Protection was enacted on March 29, 2016, and became effective on September 30 of the same year. In order to guarantee the effectiveness of insurance fraud measures, the Special Act on Insurance Fraud Prevention, which stipulates matters related to investigation, prevention, and punishment of insurance fraud, it is necessary to improve systematicity by supplementing the weaknesses of related regulations. I would like to consider a few things in this regard.

First of all, I would like to examine the necessity of punishment for participation in insurance fraud of insurance related workers. Employees of insurance related businesses are more knowledgeable about insurance business than those of general public, and are often involved in insurance fraud by exploiting the insolvency characteristics of the insurance company and the loopholes in the payment review process. Therefore, it is necessary not only to prescribe administrative sanctions in the insurance business law for insurance fraud involving insurance related workers, but also to establish specific punishment rules in the Special Act on Insurance Fraud Prevention. However, there is scope for controversy as the introduction of additional penalties in the Special Act on Prevention of Insurance Fraud and Administrative Sanctions in the Insurance Business Act of the Insurance Business Act can be double-regulated. Second, we want to examine the need to protect the policyholders related to insurance payments. According to the current Insurance Business Act, if the payment of insurance claims is delayed or rejected in violation of the basic documents, the insurance premiums

shall be levied within 50% of annual premiums (Article 196, Paragraph 1). In addition, the Special Act on the Prevention of Fraud Insurance has provisions related to delayed payment and reasons for refusal. In order to protect the insurance contractors more effectively in relation to the delay or failure of insurance companies' insurance payments, introducing a penalty system to an insurance company under the Special Act on Insurance Fraud may be a dispute. Third, we want to examine the concrete typification of the definition of insurance fraud behavior and the necessity of punishing preliminary and conspiracy. Insurance fraud prevention In the Special Act, the definition of insurance fraud is narrowly defined, and legal voids arise in relation to insurance contract fraud. Therefore, legislative supplementation is necessary in the future. In order to cope effectively with insurance fraud, Korea has enacted a special law to prevent insurance fraud by modeling foreign laws. In Germany and Austria, which are models of such laws, preliminary acts of insurance fraud are prescribed. Therefore, by prescribing preliminary and conspiracy regulations, which are criminal sanctions, in the Special Act on Insurance Fraud in Korea, It is believed that it is possible to prevent insurance fraud by minimizing the gaps and raising awareness that potential insurance fraudsters are serious crimes. Fourth, the necessity of securing the fairness and objectivity of the screening of the adequacy of the hospitalization and sharing the cost of examination work. The Special Act on the Prevention of Fraud Insurance does not contain the standards for securing the fairness and objectivity of the examination and the regulations on the sharing of the examination expenses, while causing the investigation agency to admit the appropriateness examination request of the investigation agency.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learly define the criteria that can guarantee the fairness and objectivity of the adequacy of hospitalization, and it is necessary to define the share ratio of private insurance companies and investigation agencies in relation to the examination cost sharing. Fifth, I would like to review the necessity of establishing a special organization for insurance fraud prevention and expanding the investigation staff. The government joint insurance crime countermeasures team is a comprehensive control agency for insurance fraud investigations and is installed in the 4th section of the Seoul Central District Public Prosecutors' Office. Currently, the Seoul

Central District Prosecutors' Criminal Investigation Department (4) is responsible for all economic crimes as a department dedicated to economic crime and lacks systematic and professional expertise in investigating insurance fraud crimes. These government joint insurance crime counterparts are temporary institutions and have no legal basis. Therefore, in order to cope with highly intelligent and organized insurance fraud, I think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specialized and organized insurance fraud service organization in the Supreme Prosecutors' Office. In addition, rather than granting investigative rights to the special investigation team of insurance companies, we propose a plan to expand the workforce by establishing a department dedicated to insurance fraud crimes, which has professionalism and systematic nature in the investigation and investigation.

Key Words : Special Act on Insurance Fraud Prevention, Dual Regulation, Appropriateness of hospitalization, Cost of audit work, permanent establishment of exclusive organ, Expansion of investigation staff.